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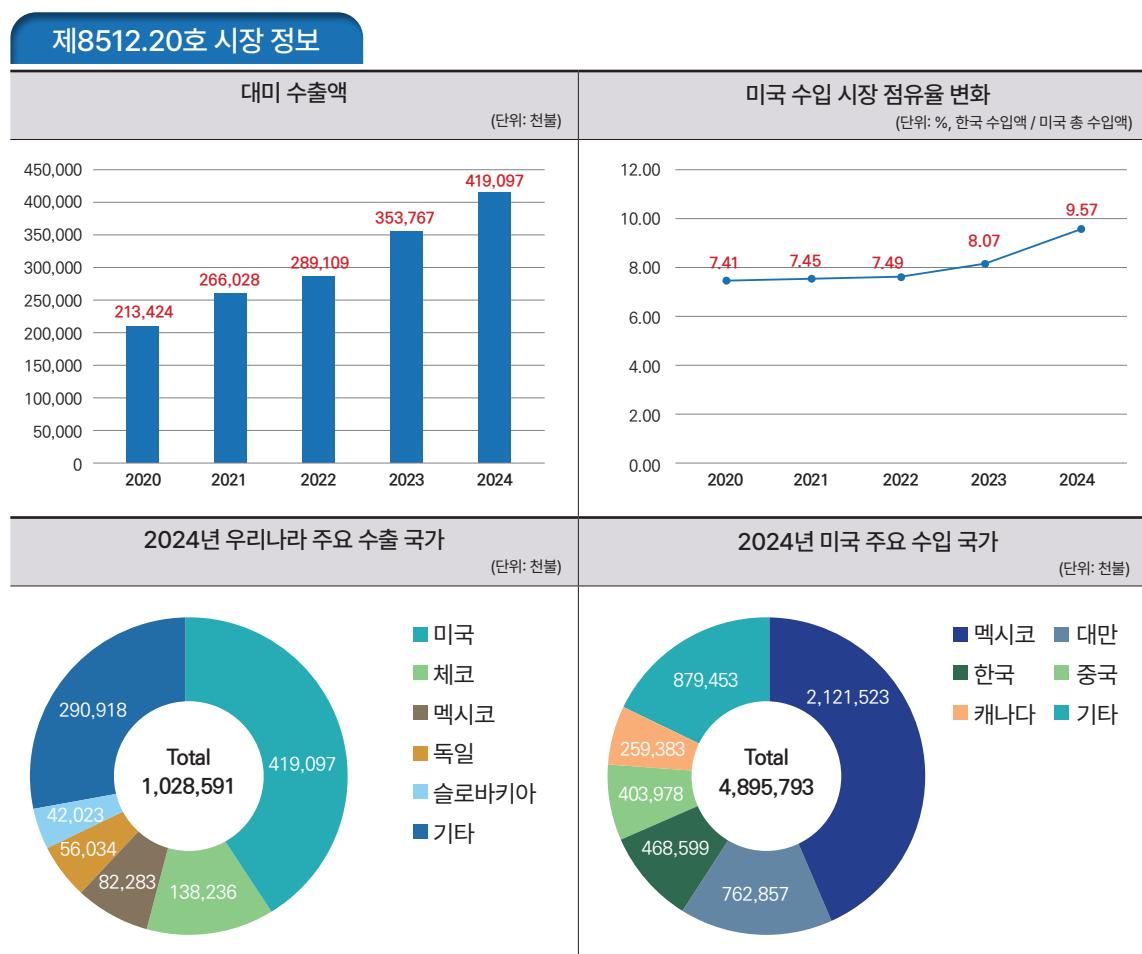
## 차량용 LED 램프

## 요약

사례명	차량용 LED 램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4910 (2020.04.21.)
사실관계	일본 또는 미국산 LED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등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들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정</li><li>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 커넥터 연결, 일부 납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정의 복잡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아님)</li></ul>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12.2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차량용 LED 램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4910 (2020.04.21.)

#### 사실관계

요청자 Grakon LLC (대리인: Heather Jacobson)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용 LED 램프 (부품번호 2082-003, 4289-001, 2000-007)</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D (일본 또는 미국산)</li> <li>PCBA (멕시코산)</li> <li>플라스틱 사출 성형물 및 기타 부품 (중국 및 기타 국가산)</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용 LED 램프</li> </ul>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512.20.20</li> </ul>

#### 제조공정



- 상세공정
- 일본 또는 미국산 LED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PCBA 제조
    - 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공정 수행
  - 중국으로 수출
  - 중국에서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납땜 등의 공정 수행
  - 검사 및 포장
  -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핵심 판단 요소: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복잡성과 기술 수준, 부품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로 기능하는지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어 완성품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며, 이 때,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 내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대만에서 제조된 다양한 정비공구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 내에서 열처리, 도금, 최종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제품 정비공구 생산

**판정** 각 물품이 수입 당시와 완제품이 된 후에도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고, 이미 대만에서 열간단조 또는 냉간성형을 통해 최종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도 않았으며, 각 부품은 이미 수입 시점에 정비용 수공구로 조립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용도의 변화 역시 없다고 판결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자재로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정**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착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관련 법령 및 분석

- CBP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광원(light source)의 원산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17620*

**사례** 다양한 수입 부품(개별 부품 및 하위 조립체)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산 LED와 결합해 렌즈 헤드 하위 조립체 및 손전등 완제품으로 제조함

**판정** 미국산 LED가 손전등의 주요 광원을 생성함으로써 렌즈 헤드 하위조립체 및 손전등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한다고 언급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15657*

- 한편, CBP는 다수의 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A)에 제조·조립하는 공정이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를 요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 참고: *Customs Service Decision(C.S.D.) 85-25, "Customs Bulletin" 제19호 844쪽(1985)*

**사례** 저항기, 다이오드, 직접회로, 소켓 등 50개 이상의 개별 가공 부품들이 하나의 PCB에 조립됨

**판정** CBP는 이 PCBA 조립 과정이 매우 많은 수의 부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작업 공정이 포함되며,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가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참고판정: *CBP Ruling HQ H114395*

**사례**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광엔진(light engine)과 PCBA 메인보드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디지털 광학 프로젝터 생산

**판정** CBP는 광엔진과 PCBA 메인보드가 프로젝터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들이 생산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을 PCB에 조립하는 것으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complex and meaningful)으로 보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PCBA가 조립된 국가를 제품의 원산지로 간주함

- 이 경우, LED 또한 PCBA에 조립되는 개별 부품 중 하나이므로,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조립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봄

## 판정 결과

-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들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단
- ▣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 커넥터 연결, 일부 납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정의 복잡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 결론

- ✓ 멕시코에서 수행된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기반의 PCBA 조립은 높은 복잡성과 기능적 통합성을 수반하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됨
- ✓ 이에 따라 최종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되며, 중국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시사점

- 광원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광원이 생산된 곳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이때, 광원을 만들기 위해 인쇄회로기판이 제작되고, 이를 위해 SMT, 웨이브 솔더링과 같은 공정이 수행된다면 이러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만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공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4910 (2020.04.21.), <https://rulings.cbp.gov/ruling/H304910>
- CBP Ruling HQ H017620 (2008.02.05.), <https://rulings.cbp.gov/ruling/H017620>
- CBP Ruling HQ H215657 (2013.04.29.), <https://rulings.cbp.gov/ruling/H215657>
- CBP Ruling HQ H114395 (2011.05.18.), <https://rulings.cbp.gov/ruling/H114395>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